



[ 2018. 9. 21.] [ 29163 , 2018. 9. 18., ]

( ) 044 - 200 - 5745

1

1 ( ) 「 」 . <  
2007. 4. 27., 2009. 6. 9.>

2 ( ) 「 」 ( " " ) 2 1 " "

1. 「 」 77 1

2.

3. 「 」 2 2

4. 「 」 2 2 4

5.

6. (公演)

7. 1 6

[ 2014. 4. 15.]

3 ( ) 2 5 " " . <  
1998. 9. 17., 2008. 2. 29., 2009. 6. 9., 2012. 2. 3., 2013. 3. 23., 2014. 4. 15.>

1.

2.

3.

4. 1 3

3 2( ) 2 11  
. < 1998. 9. 17., 2012. 2. 3.>

1.

2. 1

3.

4.

5. . . 2 4

6.

( . )

7. 1 6 2 1 6

1 "1 " "1 " 60 "

, "

1 가

.< 1998. 9.

---

17., 2012. 2. 3.>

[ 1991. 1. 29.]

[ 3 2 3 5 <1991. 1. 29.>]

3 3( ) 2 12

.<

2012. 2. 3.>

1. 54

2.

2 12

.< 1996. 8. 8., 2008. 2. 29., 2012. 2. 3., 2013. 3. 23.>

.< 1996. 8. 8.,

2008. 2. 29., 2013. 3. 23.>

2 12 , 1 2

.< 1996. 8. 8., 2008. 2. 29., 2012. 2. 3., 2013. 3. 23.>

[ 1991. 1. 29.]

3 4( ) 96 102

1 1 ( " " )

100 105 , 100 95

, 가

, 2

가

.< 2012. 2. 3.>

1

1 . 1 .

1 2

94 1

1 37 55

1 3

.< 2012. 2. 3.>

[ 1991. 1. 29.]

[ 2012. 2. 3.]

3 5( ) 2 15 " "

.< 1991. 1. 29., 2012. 2. 3.>

[ 1988. 9. 24.]

[ 3 2 <1991. 1. 29.>]

3 6( ) 2 18 " "

( " " ) .

1.

2.

3.

---

[ 2017. 1. 17.]

[ 3 6 3 7 <2017. 1. 17.>]

3 7( ) 9 2 "1  
" . < 2015. 7. 6.>

1. 1

2.

3. 「 」 3 1

[ 2014. 4. 15.]

[ 3 6 <2017. 1. 17.>]

4 ( ) 19 가 ,  
19 . . . . .

2

5 ( 가 ) 42 2 1 " "  
. < 2014. 4. 15., 2017. 1. 17.>

42 2 1 " "

. < 2013. 3. 23., 2014. 4. 15., 2017. 1. 17.>

1. 「 」 2 ( " " )

2. 「 」 2 6 8 가 42 2 2  
( " " ) 「 」 2 1

3. 가 「 」 6 , 「 」 60

「 」 28

4. 「 」 32 가

40

5.

<2017. 1. 17.>

[ 2012. 2. 3.]

[ 2017. 1. 17.]

5 2( ) 42 2 4 " "  
. < 2017. 12. 29.>

1. 가 ( 「 」 779 가 )

2. 「 」

3. 「 」

4. 가

42 2 4 " " 10 .

42 2 3 ) 42 2 4 ( )  
" " )  
. , 1 4  
. < 2017. 12. 29.>  
[ 2017. 1. 17.]

5 3( ) 42 2 4  
42 2 1  
( " " ) . < 2017. 12. 29.>  
1  
[ 2017. 1. 17.]

6 ( ) 44 3 " "  
. < 2005. 9. 30., 2007. 4. 27., 2007. 9. 28., 2007. 10. 31., 2010. 4. 20., 2012. 2. 3.>  
1. 「 」 41 1  
2. 「 」 41 2  
3. 「 」 2 1 3 가 ( " " )  
4. 가  
[ 2001. 6. 29.]  
[ 2012. 2. 3.]

7 <1998. 9. 17.>

8 ( ) 45 1 . 「  
」 ( " " ) . 112  
( " " ) . 「 」 2 7  
. < 1988. 9. 24., 1991. 1. 29., 1996. 8. 8., 1997. 5. 24., 1998. 9. 17., 2004. 1. 29., 2005. 9. 30., 2008. 2. 29., 2012. 2. 3., 2013. 3. 23., 2017. 1. 17.>

( ) 가 . < 2012. 2. 3.>  
49  
< 2005. 9. 30., 2012. 2. 3.>  
[ 2012. 2. 3.]

9 ( ) 가  
. < 2012. 2. 3.>  
[ 2012. 2. 3.]

10 ( ) 45 1 " "  
. < 1998. 9. 17., 2001. 6. 29., 2005. 9. 30., 2008. 2. 29., 2012. 2. 3., 2013. 3. 23.>



---

. < 2012. 2. 3.>  
[ 2012. 2. 3.]

3

17 ( ) 52 2 " , ,  
" .  
1. 1  
2. 1  
3.

52

1.  
2.  
3.

[ 2012. 2. 3.]

17 2( ) 53 " (非常) " 가  
. < 2013. 3. 23.>

1.  
2. 7

[ 2012. 2. 3.]

18 ( ) 56 1 " " "  
. < 2008. 2. 29., 2012. 2. 3., 2017. 1. 17.>

1. 「 」 ( " " )

2. 18 2

[ 2005. 9. 30.]

18 2( . ) 가 가 가  
( " " ) ( " " )  
) . < 2008. 2. 29., 2017. 1. 17.>

1. 가. 가 가 가

( 「 」 가 )

. 가. 가.

1

2.

가. 가 1

. 가 가 3

1

1

1

.< 2008.

2. 29., 2013. 3. 23.>

[ 2005. 9. 30.]

18 3( ) 56 1  
가 .

( )가  
. < 2007. 4. 27., 2011. 1. 24., 2012.

2. 3., 2014. 4. 15., 2018. 3. 30.>

1.

2. 「 」 2 6 8 가

2 4

3. 가 「 」 6 , 「 」 60

「 」 28

4. 가 「 」 10 , 「 」

17 「 」 28

5. 「 」 32 가

40

6. 「 」 3 1 1

29

1 3 . 5 6

.< 2008. 2. 29., 2012. 2. 3., 2013. 3. 23., 2014. 4. 15.,

2018. 3. 30.>

1 4 6

.< 2008. 2. 29., 2012. 2. 3., 2013. 3. 23., 2014. 4. 15., 2018. 3. 30.>

[ 2005. 9. 30.]

18 4( ) 56

2 18 3 1 .

( " . "

) . < 2012. 2. 3., 2014. 4. 15., 2017. 12. 29.>

. 가 1 가

7 .< 2014. 4. 15., 2017. 12. 29.>

1 2

2017. 12. 29.>

[ 2005. 9. 30.]

18 5( ) 18 4

. < 2008. 2. 29., 2017. 1. 17., 2017. 12. 29.>

1.

2.

3. 4 4

1

.

.<

2008. 2. 29., 2012. 2. 3., 2017. 1. 17.>

[ 2005. 9. 30.]

18 6( ) . 가 56 4 . < 2012. 2. 3., 2014. 4. 15., 2017. 12. 29.>

[ 2005. 9. 30.]

19 ( ) <1988. 9. 24.>  
<2005. 9. 30.>  
<1988. 9. 24.>  
57 1 , 6 6 ,  
1 1 , 6 6 . < 1991. 1. 29., 2012. 2. 3.>  
<1988. 9. 24.>

19 2( ) 57 2 . < 2012. 2. 3.>

1. 가 135 .  
2. 1 140 .  
3. 1 2 145 .  
57 2 . < 2012. 2. 3.>

1. 가 165 .  
2. 1 170 .  
3. 1 2 175 .  
<1998. 9. 17.>  
[ 1991. 1. 29.]

20 ( ) 58 " " . < 2012. 2. 3.>

1. . .  
2. 가 가  
3.  
4.  
5.  
6. 52 1  
[ 1998. 9. 17.]

20 2 <1998. 9. 17.>

4

21 ( ) 64 1 " " 500  
「 」 2 10 750 . ,



」 2 4 (曳船) 「  
」 2 4 . < 1987. 8. 13., 1998. 7. 1., 1998. 9. 17., 2001. 6.  
29., 2005. 9. 30., 2012. 2. 3., 2014. 4. 15., 2017. 12. 29.>

64 3 " " . <  
가 . <  
1998. 9. 17., 2012. 2. 3.>

64 4 " " 「 」 2 2 .  
 . < 1998. 9. 17., 2005. 9. 30., 2007.  
9. 28., 2012. 2. 3.>

64 5 " " 「 」 2 10 .  
 「 」 2 1 2 .  
 . < 2015. 7. 6.>

21 2( ) 67 1 가 . < 1997. 5.  
10 . < 1997. 5.  
24., 1998. 9. 17., 2008. 2. 29., 2012. 2. 3., 2015. 7. 6., 2017. 1. 17.>

1. 가 3 가

가. 21 2  
 . 「 」 3 1 , 3 , 5 6

2.  
3.

1 1 1 1 가  
 3  
 가 10 가  
 10 가

. < 2015. 7. 6., 2017. 1. 17.>

67 2 " 가 " .  
 . < 2012. 2. 3., 2015. 7. 6.>

1. 가  
2.  
3. 116 .  
4.

67

. < 2012. 2. 3., 2015. 7. 6.>

[ 1991. 1. 29.]

5 < 2015. 7. 6.>

22 ( ) 76 2 " " 18

1. " ) ( "

2.

가. 「 가 」 , 3

6

3. 「2006 」

1.

2.

[ 2014. 4. 15.]

22 2( ) 76 2 " "

1.

2. 65 1 10

3.

[ 2014. 4. 15.]

23 ( ) 77 4

. < 1996. 8. 8., 2001. 6. 29., 2008. 2. 29., 2012. 2. 3., 2013. 3. 23.>

23 2( ) 82 7 " 「 」 3

[ 2015. 7. 6.]

6

24 ( ) 94 1 97 「  
」 44 . < 1998. 9. 17., 2005. 9. 30., 2007. 6. 29., 2012. 2. 3.>

25 <2012. 2. 3.>

26 <2001. 6. 29.>

27 ( ) 97 「 」 53

. < 1995. 4. 15., 2005. 9. 30., 2008. 6. 25., 2012. 2. 3.>

[ 1991. 1. 29.]

28 <1991. 1. 29.>

29 ( ) 99 1 , 2 100 1 " "

. < 2001. 6. 29., 2012. 2. 3.>

1. ( ) .

2. . . .
- 3.
- 4.
5. ,
6. ,

[ [1998. 9. 17.](#)]

30 ( ) ( ) 29  
 , 29 , 29 1 1 2  
 , , ,

. < [1998. 9. 17., 2014. 4. 15.](#)>

29 1

29 1 2 .< [1998. 9. 17.](#)>

가 2

.< [1991. 1. 29.](#)>

가

가

가,

가

가

.< [1998. 9. 17.](#)>

31 ( ) 101 1  
 29 30 .< [1991. 1. 29., 2012. 2. 3.](#)>

32 ( 가 ) 106 1 "  
 .< [2018. 3. 30.](#)>

- 1.
2. 「 」 2 6 8 가  
 2 1
3. 가 「 」 6 , 「 」 60  
 「 」 28
4. 「 」 32 가  
 40
5. 「 」 3 1 1 29

[ [2017. 1. 17.](#)]

33 ( ) 106 4 32

106 4 " " 1 10

[ [2017. 1. 17.](#)]

7 < [2017. 12. 29.](#)>

34 ( ) 107 3 ( " " )

- 1.
- 2.
- 3.
- 4.

( 1 1 ) 2  
1 ,

[ 2017. 12. 29.]

35 ( ) ( " " )

(開議)

107 3

1 4

[ 2017. 12. 29.]

36 <1998. 9. 17.>

37 ( . ) 109 1 " "

< 2017. 1. 17.>

[ 2012. 2. 3.]

38 ( ) 112 3 " " . <

2012. 2. 3.>

1. 2 9

2. 44

3. 45 3

4. 51

5. 58 가

6. 87

7. 109 2

8. 117 2

9. 155

10. 17 2

112 6 가 ( )  
1 2

< 2005. 9. 30., 2008. 2. 29., 2012. 2. 3., 2013. 3. 23.>

112 6 가

.< 1996. 8. 8., 2005. 9. 30., 2008. 2. 29., 2012. 2. 3., 2013. 3. 23.>

[ 1988. 9. 24.]

39 ( ) 115 1  
107 2 2

[ 2017. 12. 29.]

40 <1999. 6. 8.>

41 <1999. 6. 8.>

42 <1999. 6. 8.>

43 ( ) 116 1  
1  
< 2012. 2. 3.>  
< 2001. 6. 29., 2008. 2. 29., 2013. 3. 23.>  
<1999. 6. 8.>  
( ) 「 」  
2  
1 < 1998. 9. 17., 1999. 6. 8.,  
2005. 9. 30.,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44 ( ) 117 1  
< 2013. 3. 23., 2017. 12. 29.>

- 1.
- 2.
- 3.
- 4.
- 5.

1 <  
2013. 3. 23.>

[ 2012. 2. 3.]

44 2( ) 117 1

1

[ 2017. 12. 29.]

45 ( ) ( " " ) 117 2  
< 2001. 6. 29., 2012. 2. 3.>

1. 가 :
  2. 가 :
- [ 1998. 9. 17.]

46 <1998. 9. 17.>

47 ( ) 118 1 . < 2012. 2. 3.>  
 [ 1991. 1. 29.]

8

48 <2005. 9. 30.>

49 ( ) 129 1 . 「  
 」 . < 1998. 9. 17., 2005. 9. 30., 2012. 2. 3.>

49 2 <2018. 5. 28.>

49 3( ) 131 ( " " )가

1. 21
  2. 44 3
  3. 82 4
  4. 129 1
- 1

2

3

[ 2014. 4. 15.]

49 4( ) 133 1 2 ( " " )  
 136 2  
 [ 2014. 4. 15.]

49 5( ) 133 3 " "

1. 가.
  2. 가.
- . 133 1 1

3. 「2006」 ( )  
가. (旗國) 가

133 4

133 5 " " 133 4

133 5 4

[ [2014. 4. 15.](#)]

49 6( ) 134 "

1. 129 3

2. 132 133

134

[ [2014. 4. 15.](#)]

50 <[2014. 4. 15.](#)>

50 2( ) 137 2 . < [2013. 3. 23.](#)>

1.

2.

3.

4.

5.

6.

1

[2013. 3. 23.](#)>

[ [2012. 2. 3.](#)]

[ 50 2 50 6 <[2012. 2. 3.](#)>]

50 3( ) 138 5 5

6

1

1.

가. :

2. :  
[ 2012. 2. 3.]

50 4( ) 140 1  
. < 2013. 3. 23.>

1.  
2.  
3.  
4.  
5.  
[ 2012. 2. 3.]

50 5( ) 146 1 142 1  
( " " )  
가 1

[ 2012. 2. 3.]

50 6( ) 147 2  
30 . < 2008. 2. 29., 2012. 2. 3., 2013. 3.  
23.>

1

. < 2008.

2. 29., 2013. 3. 23.>

1

[ 2001. 6. 29.]  
[ 50 2 <2012. 2. 3.>]

50 7( ) 151 1 2 "

1. 151 1 1 • 3 • 4 2 1 • 2 :  
2. 151 1 2 :  
3. 151 2 3 : ( 「 」 )  
1 151 1

[ 2017. 1. 17.]

51 ( 가 ) 157 " " . < 1996. 8. 8., 2008. 2. 29., 2012. 2. 3., 2013. 3. 23.>

[ 2012. 2. 3.]

52 ( • ) 158 1  
. < 2013. 3. 23., 2017. 1. 17.>



1. 124 1
  2. 124 2 3 , ,
  3. 132 1 2
  4. 133 3 6 , ,
  5. 134
  6. 137 1 • 3 4 ,
  7. 138 1 • 3 • 4 8 • • ,
- 158 1 .< 2014.

4. 15.>

1. 76 3
  2. 85 3
- 158 1 108 1 • 2 • 4 .

< 2013. 3. 23.>

2 3 .< 2013. 3. 23.>

[ 2012. 2. 3.]

52 2( ) 「 . 」  
63 1 3  
. < 1999. 6. 8., 2005. 9. 30., 2012. 2. 3.>

- 1.
- 2.
- 3.
4. •

[ 1998. 9. 17.]

53 ( ) 179 4 2 . < 2012. 2. 3.>  
[ 2011. 4. 4.]

54 ( ) 3  
가  
8 • 9 11 16  
. < 1997. 5. 24., 1999. 6. 8., 2005. 9. 30., 2008. 2. 29., 2012. 2. 3., 2017. 1. 17.>  
1 43 .<  
1997. 5. 24., 2008. 2. 29., 2012. 2. 3., 2017. 1. 17.>  
2 .< 1997. 5.  
24., 2008. 2. 29., 2017. 1. 17.>  
[ 2005. 9. 30., 2012. 2. 3.]

55 ( ) ( 117 1 「 」 19 1  
) 가 . 가

- 1. 116 1
- 2. 141 1

가 「 」 19

가

- 1. 44 3
- 2. 45
- 3. 48
- 4. 49
- 5. 12 13 3
- 6. 18 2
- 7. 18 5

109 1

109

가 「 」 19 1

가

가 「 」

19

가

- 1. 20 2
- 2. 44
- 3. 45

[ [2017. 3. 27.](#)]

56 ( ) 9 2015 1 1  
2 ( 2 1 1 )

[ [2014. 12. 9.](#)]

< 11764 ,1985. 9. 12.>

1 ( )

2 ( )

1 " 6 2 " " 4 2 "

1 " ( " " ) 113 " " ( " " ) 115 "

2 1 "3 " "5 " , 2 5 "4 " "6 7 "

3 3 " 115 " " 117 "

6 " 114 3 " " 116 3 "

3 ( )

5

가

< 12225 ,1987. 8. 13.>( )

1 ( )

2 ( )

17 1 " 2 10 " " 9 2 " , " 2 11  
 " " 9 3 " 2 " 2 12 " " 9  
 4 " .  
 21 1 " 2 9 " " 9 1 " .

< 12526 ,1988. 9. 24.>

( )

( ) 6 18 2

< 13263 ,1991. 1. 29.>

< 14447 ,1994. 12. 23.>( )

1 ( ) . < >

2 4

5 ( ) <175>

<176>

7 4 , 10 2 , 11 2 , 15 , 43 2 55 " " " "

<177> <205>

< 14628 ,1995. 4. 15.>( )

1 ( ) 1995 5 1 .

2 3

4 ( )

26 " 9 3 3 5 " " 40 3 5 " .  
27 " 13 " " 31 " .

5

< 15135 ,1996. 8. 8.>( )

1 ( ) .

2 6

7 ( ) <104>

<105> .

3 3 2 4 , 7 3 , 8 1 , 10 1 , 23 , 34 , 35 2 • 3 ,  
36 1 , 37 , 38 2 • 3 , 39 1 , 41 6 , 43 3 , 45 , 51 52  
1 • 2 " " " " .

7 4 , 10 2 , 11 2 , 15 , 43 2 , 55 " " "  
" .

39 2 .

40 2 " " " " , " " " " .

2 14 " " " " , 20 1

" " " " .

<106> <116>

8

< 15379 ,1997. 5. 24.>( )

1 ( ) .

2 3

4 ( ) ①⑨

⑩ .

8 1 , 11 2 , 12 1 4 • 2 , 13 , 21 2 1 2 , 50 , 52 1 ,  
53 2 • 3 54 1 • 2 • 3 " " " " .

8 1 " " " " , " " "  
" .

⑪ ⑬

5 6

< 15830 ,1998. 7. 1.>( )  
 1 ( ) . < >  
 2 ( )  
 21 1 " 9 1 " " 2 2  
 "

< 15892 ,1998. 9. 17.>  
 1 ( ) , 21 2 1 1 1999 1 1  
 2 ( ) 가 70 48  
 2000 12 31  
 3 ( )  
 20 1 3 " " "  
 7 3 " 107 1 " "  
 " "  
 14 3 " 107 " "  
 "

< 16391 ,1999. 6. 8.>

< 17262 ,2001. 6. 29.>

48 2002 1 1

< 18254 ,2004. 1. 29.>( )

1 ( )  
 2  
 3 ( )

8 1 " " " , " "

< 18543 ,2004. 9. 9.>

< 19077 ,2005. 9. 30.>

( ) 2005 10 1 . , 8 3 , 11 12 13  
15 , 50 54 , 18 18  
6 「 」 41

가 , 2006 7 1 .  
( ) 18 4 가  
( ) 18 1 7428 「 」

- 1. 「 」
- 2. 「 」
- 3. 「 」

< 20037 ,2007. 4. 27.>

< 20142 ,2007. 6. 29.> ( )

1 ( ) 2007 7 1 . < >  
2 3  
4 ( )

24 " 「 」 40 " " 「 」 44 " .

⑰

5

< 20300 ,2007. 9. 28.> ( )

1 ( ) 2007 11 4 .

2 5  
6 ( )

6 3 " 「 」 2 2 " " 「 」 2 1 3  
가 " .  
21 3 " 「 」 2 1 6 " " 「 」 2 2  
" .

7

< 20351 ,2007. 10. 31.> ( )

1 ( )

2 7

8 ( )

5 1 " 「 」 41 1 2 " " 「 」 43 1 2  
" , 2 " 「 」 46 " " 「 」 49 " .  
6 1 " 「 」 41 1 1 " " 「 」 43 1 1 "  
, 2 " 「 」 41 2 1 " " 「 」 43 2 1  
" .

㉓

9

< 20722 ,2008. 2. 29.> ( )

1 ( ) , 6

2 5

6 6 ( ) <65>

<66>

8 1 " ( )" " ( )  
" " ( )"  
13 1 " ( )" " ( )  
)" "

3 4 , 10 1 1 • 2 , 12 , 13 4 , 18 2 3 , 18 4 3 , 23 ,  
 43 2 , 52 3 • 5 2 10 " " " " .  
 3 3 2 4 , 8 1 , 15 3 , 18 3 2 • 3 , 23 , 38 2  
 • 3 , 39 1 • 2 , 43 4 , 50 2 1 • 2 , 51 52 1  
 • 2 • 3 • 4 • 5 " " " "  
 18 2 , 18 2 1 , 18 5 1 • 2 , 21 2 1 2 ,  
 37 , 50 , 52 1 53 2 • 3 , 54 1 • 2 • 3  
 " " " " .  
 1 " " " " " " .  
 2 " " " " " " " " " " .  
 <67> <138>

< 20875 ,2008. 6. 25.>( )

1 ( ) 2008 7 1 .  
 2 13  
 14 ( )

27 " 「 」 31 " " 「 」 53 " .

15

< 21530 ,2009. 6. 9.>

2009 8 7 .

< 22127 ,2010. 4. 20.>( )

1 ( ) 2010 4 23 .  
 2 9  
 10 ( )

5 1 " 「 」 43 1 2 " " 「 」 6 1 " .  
 5 2 .  
 6 1 " 「 」 43 1 1 " " 「 」 41 1 " , 2 " 「  
 」 43 2 1 " " 「 」 41 2 " .



㉓

11

< 22157 ,2010. 5. 4.>

< 22637 ,2011. 1. 24.> ( )

1 ( ) 2011 1 24 . < >

2 21

22 ( )

18 3 1 1 " 「 」 2 5 " " 「 」 2 6 " , " 2 7  
" " 2 8 " , " 「 」 2 3 " " 「 」 2 4 "

23

< 22829 ,2011. 4. 4.> ( )

1 ( )

2 ( 「 」 ) 「 」 119 1 4  
가

3 ( 「 」 가 ) 「  
」 27 3 가

4 ( )

< 23620 ,2012. 2. 3.>

1 ( ) 2012 2 5 . , 3 2 2 , 3 3 1 1 , 32 1 ,  
49 , 52 1 3 , 2 2 . 「2006 」

2 ( ) 1

11024

2

3 ( 가 ) 5 1 2

4 ( ) 17 2

5 ( ) 19 2

6 ( 가 ) 44

52 3  
117 1 44

7 ( ) 50 5

8 ( )

22 1 2 " " 2 " " 3 "

40 4 4 " " " , " " " ,  
5 " " 67 69 " " 69 71 " , 6  
" " 85 1 88 " " 94 1 97 "  
40 6 1 5 " " 85 1 88 " " 94 1 97 "

4 2 " " 3 8 " " 2 11 " , 3 "  
" " " , " 109 1 " " 119 1 "

1 15 " " 63 3 " " 64 3 "

1 25 4 " " 3 5 " " "  
2 6 "

< 24443 ,2013. 3. 23.> ( )

1 ( ) . < >

2 5

6 ( ) <123>

<124>

3 4 , 10 1 1 , 2 , 12 , 13 4 , 18 2 3 , 18 4 3 ,  
 23 , 43 2 2 2 " " " " .  
 3 3 2 4 , 5 2 5 , 8 1 , 15 3 , 17 2 2 , 18  
 3 2 · 3 , 23 , 32 1 5 , 38 2 · 3 , 39 1 , 5 ,  
 2 · 3 , 43 4 , 44 1 , 5 , 2 , 50 2  
 1 6 , 2 , 50 4 , 5 , 50 6 1 · 2 , 51 , 52  
 1 2 4 " " " " .

<125>

<146>

< 25310 ,2014. 4. 15.>

- 1 ( ) ,
1. 2 , 3 , 3 6, 32 1 1 , 49 2, 49 4, 49 5 49 6: 「2006  
 」
  2. 5 1 : 3
  3. 22 , 22 2 52 2 1 :2015 2 6
- 2 ( ) 1 3 22
- 52 2 1
- 1 22 1 4
- 3 ( 가 ) 5 1 1 2
- 4 ( ) 가
- 30 1
- 5 ( ) 50 가
- 49 3 가

< 25532 ,2014. 8. 6.>(

)

2014 8 7

< 25751 ,2014. 11. 19.>(

)

---

1 ( ) . , 5

2 4

5 ( ) <383>

<384>

2 2

" " " "

<385> <418>

< 25840 ,2014. 12. 9.> ( )

1 ( ) 2015 1 1 .

2 16

< 26386 ,2015. 7. 6.>

1 ( ) 2015 7 7 .

2 ( ) 21 2 1 2

3 ( ) 23 2

< 27795 ,2017. 1. 17.>

2017 1 18 .

< 27960 ,2017. 3. 27.> ( )

2017 3 30 . < >

< 28211 ,2017. 7. 26.> ( )

1 ( ) . , 8

2 7

8 ( ) <316>

<317>

2 2

" " " "

<318> <388>

---

< 28557 ,2017. 12. 29.>

.

< 28779 ,2018. 3. 30.>

.

< 28914 ,2018. 5. 28.>

2018 5 29 .

< 29163 ,2018. 9. 18.> ( )

1 ( ) 2018 9 21 .

2 ( )

.

14 " 1 28 3 " " 1 3" .

⑰

**3**

[별표 1] 삭제 <1991.1.29>

**과태료의 부과기준(제53조 관련)**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법 제17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선원의 근로 및 생활 등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가. 선장이 법 제12조 본문을 위반하여 선박의 충돌 시 선박의 명칭·소유자·선적항·출항항 및 도착항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1호	50	100	200
나. 선장이 법 제14조 본문을 위반하여 폭풍우 등 기상 이상이 있거나 떠돌아다니는 얼음덩이, 떠다니거나 가라앉은 물건 등 선박의 항해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것과 마주친 경우 그 사실을 가까이 있는 선박의 선장과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1호	50	100	200
다. 선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1항제1호	125	250	500
라. 선장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여객에게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	법 제179조 제1항제2호	125	250	500

시키지 않은 경우				
마. 선장이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대비 훈련을 실시할 때 해원의 휴식시간에 지장을 준 경우	법 제179조 제1항제3호	125	250	500
바. 선장이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선박에 있는 유류품에 대하여 보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1호	30	60	100
사. 선장이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국적 증서, 선원명부, 항해일지, 화물에 관한 서류 또는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선내에 갖추 두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3호	30	60	100
아. 선장이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선박의 충돌·침몰·멸실·화재·좌초, 기관의 손상 및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, 항해 중 다른 선박의 조난을 안 경우(무선통신으로 알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), 인명이나 선박의 구조에 종사한 경우,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, 미리 정하여진 항로를 변경한 경우, 선박이 억류되거나 포획된 경우 또는 그 밖에 선박에서 중대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4호	50	100	200
자.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흉기, 폭발하거나 불붙기 쉬운 물건,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른 유독물질,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승선한 사람이 즉시 선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5호	30	60	100
차.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법 제4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5호의2	50만원 한도에 서 통지하 지 않은 선박 1척당 1만원	10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2만원	200만원 한도에 서 통지하 지 않은 선박 1척당 4만원
카.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승선·하선 교대가 있을 때 마다 선원명부에 그 사실과 승선 선원의 성명을 적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6호	10	30	50
타.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법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승선·하선 교대가 있을 때 마다 선박에 갖추어 둔 선원명부의 공인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6호	30	60	100
파. 선박소유자가 법 제58조를 위반하여 임금대장을 갖추두지 않거나 임금 지급 시마다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적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3항제1호	10	30	50
하. 선박소유자가 법 제6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	법 제179조제2	10	30	50

원의 1일 근로시간,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를 기록한 서류를 선박에 갖추두지 않거나, 선장에게 근로시간, 휴식시간, 시간외근로 및 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지 않은 경우	항제7호			
거. 선박소유자가 법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기 능력의 향상을 위한 선원의 선상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·실시, 해양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선상 비상훈련의 실시, 항해당직에 관한 상세한 기준의 작성·시행 및 선박 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제52조의2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1항제4호	125	250	500
너. 선장이 법 제7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차별 급식을 한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9호	30	60	100
더. 선박소유자가 법 제8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 즉시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10호	50	100	200
러. 선박소유자가 법 제82조제5항을 위반하여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, 의약품의 비치와 선내위생의 유지 및 이에 관한 교육의 시행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11호	50	100	200
머. 선박소유자가 법 제82조제7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1항제5호	125	250	500
바. 선원이 법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소유자가 제공한 제복을 입고 근무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3항제2호	30	60	100
사. 선박소유자가 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서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선원으로 승무시킨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12호	50	100	200
아.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법 제10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12호의 2	5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1만원	10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2만원	20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4만원
지.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이 법 제10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또는 구직·구인등록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고 선박에 승무한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2호	10	20	30
치.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가 법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직·구인등록기관에 구인등록을 하지 않고 선원을 고용한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2호	50	100	200
커. 선원관리사업자가 법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원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그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13호	50	100	200
터. 선박소유자가 법 제119조제1항을 위반하여	법 제179조	50	100	200



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해양항만관청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제2항제14호			
퍼. 법 제1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선박 또는 사업장 출입을 거부·기피·방해한 경우, 장부·서류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장부·서류를 제출한 사람 또는 거짓의 진술을 한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15호	50	100	200
히. 선원이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	법 제179조 제1항제6호	125	250	500
고. 선박소유자가 법 제1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한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16호	50	100	200
노. 선박소유자가 법 제151조를 위반한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2호	50	100	200